"2017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"

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

서울형 R&D 지원사업(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사업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7월 13일
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1. 사업 개요

▣ 지원규모 : 총 15억원 이내

○ 서울시 지원금 : 총 사업비의 60% 이내

- 과제당 1억~5억원이내/년, 최대 3년

○ 민간부담금 : 총 사업비의 40% 이상(민간현금은 서울시지원금의 10% 이상)

○ 사업기간

- 총 사업기간 : 2017. 10. 01. ~ 2020. 09. 30.(최대 36개월 이내)
- 당해연도 사업기간 : 2017. 10. 01. ~ 2018. 09. 30.(12개월)

※ 미세먼지 관련 R&D 예산 20억원중 5억원은 별도 과제로 진행 예정

※ 사업기간은 선정 및 협약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※ 평가위원회 및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과제당 시지원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조정 가능

▣ 공모방식 : 자유 공모

○ 참여기관이 제시된 지원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

▣ 지원내용

○ 미세먼지 원인규명, 모니터링, 예보, 저감기술 및 신제품 개발, 시범적용, 사업화 소요비용 등 지원

▣ 지원대상

○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이 산-학-연 컨소시엄 구성

- 주관기관 : 서울 소재 대학, 연구소, 법인기업

- 협력기관 : 대학, 연구소, 기업, 협회, 단체 포함(지역제한 없음)

※ 대학, 연구소가 참여하지 않은 협회나 단체, 기업 간 컨소시엄, 기업단독 등 컨소시엄이 아닌 경우 **신청 불가**

▣ 지원분야

○ 미세먼지 원인규명, 농도·성분 측정 및 모니터링, 예보 및 저감기술 개발, 대응체계 마련 및 시범적용·사업화 지원 등

- 4차 산업혁명 관련 요소기술(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, IOT, 클라우드)로 활용된 과제 우선지원

※ 기술 개발 과제 (예시)
① 자동차 공회전 원격 감시기술
② 지하터널 내 대기오염물질 및 공사장 비산먼지의 효과적 예방과 규제 기술
③ 중소규모사업장(도장, 인쇄소 등)의 초미세먼지 전구물질(VOC, NOx, 블랙카본 등) 발생 예방 및 배출저감 기술
④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(LEZ 등)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원격측정 적용기술

2. 추진체계 및 지원자격

▣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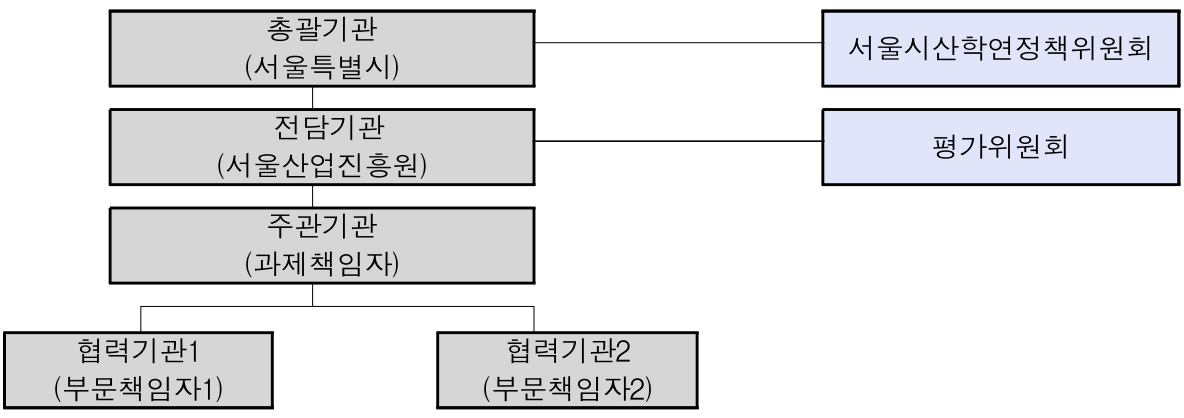

▣ 참여기관 자격

○ **주관기관**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기업, 대학, 연구소(기관)으로서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관

※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경우, 대학(산학협력단 포함) 또는 아래의 연구기관이 필히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

-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,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
-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특별시 해당 권역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기업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사회적 기업
-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「민법」 상 비영리법인 또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또는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인 중소기업상담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액셀러레이터, 기술거래기관, 사업화전문회사, 기술평가기관
-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

○ **협력기관**은 지역제한 없음(서울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)

-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(서울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하지 않거나 법인기업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)
- 지방자치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지방자치단체
-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

▣ 과제(부문)책임자의 자격

○ 과제책임자: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 소속 책임자

- 법인기업 및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자로 대표이사, 이사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, 해당분야의 5년 이상 기술개발 경험을 갖춘 자
- 대학의 전임교수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전임연구원

○ 부문책임자

-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직원

3. 지원 원칙

▣ 기본 원칙

○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·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료구입・인력지원 등의 지원을 우선하며, 과제성격에 따라 장비구입・시설구축 등 허용

○ 사업비 지급은 사업비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

○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전 시지원금의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(보증기간 : 당해연도 사업기간+6개월)
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비는 협약체결 후 사업비에서 소급 가능

※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최종 선정결과통보 후 1달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

▣ 지원제외 및 결격사유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협력기관의 장, 과제책임자, 부문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참여제한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○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협력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, 부문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·면책권자 등을 포함하여 신용거래불량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-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500%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,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의견'인 경우**(주관기관에 한함)**

○ 과제책임자 및 부문책임자의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
○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(신청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개별 확인 후 지원 요망)

○ 접수마감일 기준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

▣ 기술료 납부 의무

○ 기술요율

실시기업 유형	정액기술료	비고
대기업	사용 시지원금의 40%	납부시기, 감면율, 납부방법 등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
중견기업	사용 시지원금의 20%	
중소기업	사용 시지원금의 10%	

※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름

4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
▣ 추진절차(사업일정)

사업공고 (7월)	⇨	신청/접수 (8월)	⇨	선정평가 (9월)	⇨	심의/의결 (9월)	⇨	협약체결 (10월)
서울산업진흥원		주관기관		평가위원회 (2단계 평가)		정책위원회		서울산업진흥원 ⇄ 주관기관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▣ 선정기준

○ 평가위원회의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(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)와 가점을 반영한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우선순위 부여

○ 종합평점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평가기준

구 분	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기술성 (60)	기술의 혁신성 및 우수성	-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의 활용성 -개발 기술의 원천성(요소기술) 및 혁신성	20
	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	-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	10
	기술개발 내용의 충실성/구현가능성	-선행기술과의 차별성 및 기술구현 가능성 -목표달성(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)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? -기술개발 과정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	20
	참여기관(인력)의 수행역량 및 전문성	-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. 안정성 -연구 참여인력의 구성 및 연구능력 -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, 역량	10
사업성 (40)	사업화 가능성/추진전략 및 현장 적용성	- 사업화 추진계획 및 가능성, 시장확장성 - 사업성과의 현장 적용계획 및 가능성 -개발성과 활용방안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	20
	서울경제/산업 파급효과	-서울 경제/산업/일자리 등 파급효과 -환경(대기) 문제 개선 효과(중장기 개선효과)	20
합 계			100점

○ 우대기준

우 대 사 항	가점
- 서울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이내 '우수'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인 경우 - 민간현금을 시지원금 대비 20% 이상 출자하는 경우 - 서울시 또는 서울시 산학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 투자받은 기업이 컨소시엄에 있는 경우 - 과제신청시 서울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인 하이서울브랜드 지정기업,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인증기업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기업, 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인 경우	각 1점

※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관련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됨.

○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

-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절차의 공정성, 평가방법의 타당성, 선정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사업자를 최종 결정
- 정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, 적합한 과제가 없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5. 신청요령

▣ 신청방법

○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sba.seoul.kr/kr) 전산등록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과제계획서(붙임서류)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

○ 공고 및 인터넷(전산등록) 접수기간 : **2017. 7. 13(수) ~ 08. 17.(목) 18시까지**

○ 방문(또는 우편) 제출기간 : **2017. 08. 18.(금) 16시까지**

※ 전산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

※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. 전산등록 마감기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

※ 과제계획서 파일명 : 17년 미세먼지 저감기술_(주)희망서울(주관기관명)_이사랑(과제책임자명).hwp

○ 접수처 : (03925)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(상암동)

서울산업진흥원 14층 기업성장본부 R&D지원팀

▣ 제출서류

서 류 명	원본/사본	부수
주관기관장 명의 공문	원본	1부
과제계획서(제본)	원본/사본	1부/8부
과제요약서(엑셀 파일)	사본	9부
붙임서류 및 각종 자격증빙서류	원본	1부

※ 붙임서류 및 각종 자격증빙서류는 과제계획서와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

6. 기타사항

▣ 관련규정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

○ 과제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, 과제참여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○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
○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’ 및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’을 적용함

▣ 문의처

○ 온라인: 서울산업진흥원 R&D지원팀 홈페이지(http://seoul.rnbd.kr) Q&A

○ 담당자: 서울산업진흥원 R&D지원팀 담당자(☎ 02-2222-3829)

※ 공고 수정 내용 : 과제 예시문 수정(수정사항 청색 글자색 처리)